

韓國企業에 있어서의 技術開發 政策과 特許制度의 漸進方案(1)



李 秀 雄

〈韓國工業所有權法學研究院 院長·辨理士〉

I. 企業과 特許制度

企業이란 營利를 目的으로 商品이나 서비스를 生産·販賣하는 生産經濟의 單位體이며 利益을 극대화하려는 個別經濟의 單位體를 의미하기 때문에 最大의 利潤을 얻는데 그 目的이 있다.

企業의 利潤을 극대화 하기 위한 第一의 方案은 어디까지나 가격이 저렴하고 品質좋은 商品을 製造·販賣하여 需要者의 慾求를 충족시키는 길 밖에는 없다.

品質좋은 商品의 生産은 계속적인 새로운 技術開發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他人의 製品을 모방하거나 外國人의 技術導入에만 의존하여서는 안된다.

새로운 技術, 새로운 아이디어는 他人이 이를 침해·모방하지 않도록 國家(特許廳)으로부터 特許權·實用新案權 및 意匠權을 獲得하여야 한다. 즉 企業은 새로운 技術開發品,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하여 特許權等を 獲得함으로써 他人의 使用를 배척하고 獨占함으로써만이 企業間의 競爭에 승리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企業은 國內市場을 탈피하고 海外市場을 개척해 나가야 하며 企業의 商品이 海外에서 認定받기 위해서는 역시 外國技術을 능가한 좋은 製品을 수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우리나라가 高度産業國家를 지향하기 위해

서는 先進工業國의 技術을 맹목적으로 답습하는 모방형태보다 우리의 技術을 발전혁신시키고 産業構造를 다양화하여 國際競爭力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國際競爭力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民間主導로 技術革新을 世界産業社會의 脈絡으로 풀어 가려는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부딪치는 장벽은 바로 先進工業國의 特許權이다. (註 1)

先進工業國의 特許權때문에 우리 기술에 의한 새 商品을 外國에 수출하지 못한 사례를 누누히 보아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다 할만한 發展이 없는 것이 우리 企業의 實狀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企業이 外國과의 貿易戰爭 또는 特許戰爭에서 優위의 地位를 확보하는 방법은 技術革新에 의한 좋은 제품을 開發하여 國內은 물론 外國에서 特許權을 獲得하는 길 뿐이다.

II. 歷史적으로 본 우리나라의 特許制度

우리나라에서 特許法을 처음으로 制定한 것은 舊韓末, 즉 1908년 8월 12日 勅令 第196號로 공포된 「韓國特許令」인데, 이 韓國特許令은 同年 8월 16日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의거하여 約 2년간 特許行政이 實施되었으나 곧 日帝의 침략이 있어서, 1910년 8월 29日 이른바 韓日合併이 되자 即日로 韓國特許令은 폐지되고 말았다. 그

리고 그 대신 日本의 特許法·實用新案法·意匠法이 韓國에도 시행되게 되었으며 特許行政도 日本의 中央機關에 흡수되어 一括取扱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韓國人の 發明意慾이 크게 저해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우리나라 固有의 工業所有權法の 發展도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1945年 8月 15日 해방 후에는 美軍政法令 第44號로써 特許院을 창설하고 1946年 10月 5일에 軍政法令 第91號로 特許法이 제정, 공포되고 同日자로 特許法施行規則도 공포되어 이에 따라 特許局이 발족되었는데 이것이 지금의 特許廳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特許制度가 制度的으로 발전되기 시작한 것은 5.16 혁명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으며 이때부터 美軍政時 제정된 일체의 特許法 등을 재정리하여 현재의 特許法을 마련하여 各企業에 發明에 대하여 어느정도 관심을 갖도록 하였던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各企業에게 發明 장려를爲한 홍보활동을 적극화하는 한편 技術開發 支援金을 보조하는 등 特許制度發展을 爲해 各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Ⅲ. 外國의 特許制度

1. 美國

美國의 特許制度는 英國의 特許制度를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特許制度가 發展되었다. 美國은 特定業種에만 發達된 것이 아니라 全業種에 이르기까지 經濟大國 工業立國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모두 特許制度를 일찍 정착시킨 결과라 하겠다.

美國의 企業은 特許部署를 社長直屬이나 經營陣 直屬下에 두고 있으며 이 特許部署는 各國際特許部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美國의 大企業은 世界的인 企業이며 中小企業이라 하더라도 特許制度가 發達되었기 때문에 自國은 물론 世界各國에 出願하고 있기 때문이다.

2. 日本

日本은 일찍이 美國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의 特許制度에 비해 상당히 앞서 있으며 최근에

는 세계에서 出願件數가 많은 나라로 부상되었다. 日本의 特許, 實用新案의 出願件數는 年間約 50萬件이 넘으며 일본기업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出願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일본의 기업 역시 企業內에 特許部나 特許課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海外에 出願하는 件數도 상당수에 이른다.

3. 西獨

西獨의 工業所有權 制度는 1877년도에 西獨統一特許法이 탄생되고 그 후 수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西獨은 第二次大戰以後 産業復舊에 힘써 오늘날은 世界 第一位의 化學工業國이다. 따라서 西獨은 醫藥品 및 化學品에 대한 特許가 상당히 많고 우리나라에 進出하고 있는 西獨의 企業도 거의 醫藥品 製造業體이고 出願件數도 化學藥品에 관한 特許가 大部分이다.

Ⅳ. 外國人の 特許出願 現況

現 우리나라 特許廳에 特許出願 件數는 우리나라 自國民의 特許出願 件數 보다도 外國人の 特許出願 件數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特許廳의 統計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內國人の 特許出願件數는 1979年度에 258件인데 비해 外國人の 特許出願件數는 무려 1,161件이 되어 外國人이 82%를 차지하고 있으며, 1980年度에는 內國人이 186件인데 비해 外國人은 1,446件으로써 89%를 점하고 있고, 1981년도에는 內國人の 特許出願件數가 232件인데 비해 外國人은 1,576件으로서 87.2%를 점하고, 1982년에는 內國人이 1,556건인데 비해 外國人은 4,368건으로서 73.7%, 1983년도에는 內國人이 1,599件, 外國人은 4,785件으로써 75%를 점하고 있고 1984년에는 內國人이 1,997 건이고, 外國人이 6,636 건으로서 76.9%를 점하고 있다.

이상 內國人和 外國人の 特許件數를 보더라도 우리의 特許開發政策과 特許制度가 얼마나 후진성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고 우리의 企業이 外國의 技術을 무턱대고 선호해서 모방·도입하였는가를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V. 韓國企業에 있어서의 技術開發政策과 特許制度의 漸進方案

1. 技術開發

(1) 技術開發의 必要性

우리나라가 1960年代 및 70年代에 순탄한 好景氣를 누렸던 것은 越南 및 中東의 政治의 인배려와 勤勞者의 低賃金에 의한 低價生産을 하여왔기 때문이다(註 2). 이러한 好景氣는 技術革新에 의한 利潤獲得이 아님은 勿論이며 이는 곧 우리 企業의 經濟體質改善의 가장 重要한 基本條件이다.

企業이 技術革新 없이 장기적으로 국내는 물론 國際競爭力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지난 1979년 末부터 現在까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革新에 의한 長期의 經濟戰略을 세워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事實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外國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日本의 企業이 2次에 걸친 世界的 에너지 波動을 內的 技術蓄積으로 흡수하여 80年代를 技術立國의 年代로 삼았으며 최근 美國은 지난날 누렸던 大部分의 技術 life cycle이 1970年代에는 그 性能이 弱화되기 시작하여 80年代에는 崩壞의 위기에 있다는 點을 예고하고 있고, 또한 최근 프랑스國 企業에서도 技術革新은 새로운 製品이나 새로운 技術을 開發할 뿐만 아니라 生産過程을 短縮함으로써 市場과 價格面에서 유리한 立場을 取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製品壽命을 대폭적으로 短縮시켜주고 급속히 가속되어가는 企業環境에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이 先進諸國에서도 技術革新의 問題를 企業死活의 차원까지 확대하여 새로운 도약의 단계로 설정한 點을 보아도 앞으로는 지속적인 技術革新에 의한 商品을 生産販賣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 企業의 80年代 企業目標도 技術蓄積에 의한 製品의 高級化, 應用技術의 開發, 그리고 企業의 內國化를 지양하고 國際化를 꾀하며 産業革新을 지향하고 있음을 상기할 때 技術開發의 必要性은 증대하다.

더욱 日本의 高級技術을 우리의 企業에 移轉하지 않는 것도 日本技術의 保護政策의 一環인 동시에 國際輸出競爭力에서 우위의 地位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포석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또 日本과의 貿易逆調가 엄청난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가 底技術에 의한 製品을 日本人이 수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外國人이 우리나라의 產品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產品보다도 품질이 좋거나 가격면에서 優가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日本등 先進國家와의 貿易逆調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첨단기술을 개발·장려해야 한다.

(2) 技術開發投資

지금까지 우리의 企業은 自體技術開發에 의한 生産力을 提高한 것이 아니라 外國技術導入이나 모방에 의한 生産을 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一言해서 技術開發을 하지 않고 外國의 技術에만 의존한 것이다.

勿論 우리의 企業이 技術開發을 하는 데는 基本資源의 不足, 人力不足 및 길지않은 經濟歷史 등 여러가지 原因이 있을 수 있고 또 技術開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뿐 아니라 항상 위험이 따르고 엄청난 資本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技術開發投資가 인색한 것이다(註 3).

그러나 현금에 와서는 安일무사한 技術의 모방이나 外國技術導入에만 의존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 企業에서는 技術開發에 획기적인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된다.

技術開發은 投資없이 이루어 질 수 없고 어느 정도의 모험심과 위험성을 감수해야만 한다.

技術開發投資는 위험성이 있는 반면 過程과 波及效果가 커서 언제가는 國民經濟의 底力으로 부상한다는 點을 감안하면 일시적 기우는 어디까지나 기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各 企業體에서는 技術開發費로 全體 매상고의 1%도 안되는 豫算을 책정하고 있고 이 액수도 전부 技術開發에 投資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業務에 流用해 버리는 事例가 허다하다.

따라서 우리의 企業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技術開發에 積極的이고 具體的인 計劃下에 先進國에서와 같은 技術開發費를 책정하여 研究開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先進國의 技術開發費는 全體 매상고의 3~4%

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政府도 先進國과 같은 技術開發投資促進方案을 立法化하기 위해 成案中에 있다.

(3) 技術情報入手(工業所有權情報入手)

企業은 좋은 技術에 의한 좋은 商品을 製造·販賣해야 하므로 競爭企業이 어떠한 技術에 의한 商品인가를 예의 관찰하여 정보수집하고 또 이런 商品들이 特許權을 獲得하였는가 여부에 관한 정보 및 앞으로의 技術動向, 外國에 新製品이 있는가를 항상 情報수집하여 이를 相關부서에 제공해야 한다. 이와 같은 情報入手는 研究時間의 浪費를 줄여주고 研究者의 實驗時間을 극대화시켜 주기 때문에 研究開發에 필요한 技術情報를 入手하여 적절한 時에 研究者에게 提供해주는 전문적인 技術水準動向 分析活動에 必要하다.

技術이나 特許에 관한 情報는 特許에 관한 公報, 公開公報나 各種技術文獻이다.

특히 特許權의 文獻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註 4).

① 特許文獻中 特許 및 實用新案 文獻은 모든 기술문헌중에서 가장 최신간의 技術情報를 提供하고 있다. 特許하는 것은 최신의 發明者나 最先의 發明出願人에게 特許되므로 좋은 技術은

하루속히 出願하여 特許를 得하여야 한다.

② 特許公報 등의 文獻은 發明이나 考案 등을 하게된 一定의 目的과 종래의 技術과 대비한 구체적인 문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技術開發에 있어 하나의 指針書가 된다.

③ 上記 文獻은 競爭企業이나 外國企業의 技術動向을 제시하여 주고 있다.

이와 같이 特許情報는 매우 重要하고 製品開發에 必要한 情報中에서 大部分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上記 技術文獻이나 特許文獻에 의한 情報를 조기 入手하지 못하면 여러가지 폐단이 뒤따른다. 즉 競爭企業이 어떠한 技術에 의한 製品인가를 알지 못하고 또한 特許의 動態를 把握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企業의 發明이 최선의 發明이라고 생각하여 特許出願하거나 技術開發을 하게되면 二重投資·二重研究 및 二重出願하여 經濟적인 損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特許情報 및 技術정보를 조기에 入手하여 二重出願 및 二重研究에서 오는 폐단을 제거해야 하며, 또 企業이 技術정보의 수용태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世界各國의 새로운 製品이나 技術로 부터 받는 위험만으로도 동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계속>

本會主要實行業務

1 月的 메모

- | | | |
|--|------------------------------|---------------------------------|
| 9日 ◇ 第487回 이週의 優秀發明「휴대용 電子保溫容器」選定 報道依賴 | 明「上·下炭이 붙지않는 改良연탄」選定 報道依賴 | 明「구멍탄 自動交替장치」選定 報道依賴 |
| 12日 ◇ 第11回 發明教室 開催 | 25日 ◇ 月刊 發特許許 1月號 (107號) 發刊 | ◇ 第13回 제네바 國際發明·新技術展示會 出品者모집 마감 |
| 16日 ◇ 第488回 이週의 優秀發明「콘센트」選定 報道依賴 | 29日 ◇ 工業所有權 專門家招請 講演會 | ◇ 第9回 뉴욕國際發明·新製品展示會 出品者모집 마감 |
| 20日 ◇ 工業所有權 登錄目錄 (84—11) 發刊 | 30日 ◇ 工業所有權 大法院判例集(84—12) 發刊 | |
| 24日 ◇ 第489回 이週의 優秀發明 | 31日 ◇ 第490回 이週의 優秀發明 | |